

改正法律(特許·實用新案·意匠法)

- ◎……特許廳에서 特許協力條約(PCT) 加入에 對備하여 推進하던 工業所有權 4法 改正法律案……◎
- ◎……이 82年 11月 2日 國會의 議決을 거쳐 82年 11月 29日 法律 第3566號(特許法中 改正法……◎
- ◎……律) 法律 第3567號(實用新案法中 改正法律), 法律 第3568號(意匠法中 改正法律)로 公布……◎
- ◎……되었다. ……………◎
- ◎……改正法律의 特徵은 처음의 改正法律案에서 特許法 97條의2, 實用新案法 25條의2, 意匠……◎
- ◎……法 41條의2, 商標法 43條의2를 新設하여 審査官이 無效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 無效事……◎
- ◎……由가 重大하고 明白하면 權利效力을 一時停止시킬 수 있게 하여 論議의 對象이 된 것……◎
- ◎……을 削除하였다는 點이다. ……………◎

法律第3566號

特許法中改正法律

特許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의 2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第1項의 他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이 第157條의10 第1項의 國際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法 第29條의3 第1項의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第157條의21 第4項 또는 實用新案法 第29條의11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을 포함한다)인 경우에 第1項의 適用에 있어서는 第1項중 “出願書에 最初에 첨부한 明細書 또는 圖面에 記載된 發明 또는 考案”은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과 그 出願翻譯文에 다같이 記載된 發明 또는 考案”으로 한다.

第97條第2項 但書를 削除한다.

第8章의2 (第157條의2 내지 第157條의21)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8章의2 特許協力條約에 의한 國際出願

第1節 國際出願節次

第157條의 2 (國際出願을 할 수 있는 者)

①大韓民國 國民 또는 大韓民國내에 住所나 營業所가 있는 外國人은 特許廳長에게 特許協力條約 第2條의 國際出願(이하 “國際出願”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國際出願을 할 수 있는 者와 그외의 者가 共同으로 國際出願을 하는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要件에 해당하는 者도 國際出願을 할 수 있다.

第157條의3 (國際出願) ① 國際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商工部令이 정하는 言語로 作成한 出願書·明細書·請求의 범위·필요한 圖面 및 抄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出願書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당해 出願이 特許協力條約에 의한 國際出願이라는 표시.

2. 당해 出願의 發明의 보호가 요구되는 特許協力條約 締約國의 指定

3. 第2號의 指定國중 特許協力條約 第2條(iv)의 地域 特許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趣旨.

4. 出願人의 姓名이나 名稱·住所나 營業所 및 國籍

5.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代理人의 姓名이나 名稱 및 住所나 營業所

6. 發明의 名稱

7. 發明者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指定國의 法令에 發明者에 관한 事項의 記載가 規定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第1項의 明細書는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가 容易하게 實施할 수 있도록 明確하고 詳細하게 記載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의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事項의 明確하고 簡潔하게 記載하여야 하며 明細書에 의하여 充分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⑤ 第1項 내지 第4項 외에 國際出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7條의4 (國際出願일의 인정등) ① 特許廳長은 國際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國際出願이 特許廳에 到達한 날을 特許協力條約 第11條의 國際出願日(이하 “國際出願日”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1. 出願인이 第157條의2에 規定된 要件을 充足하지 못하는 경우.

2. 第157條의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言語로 作成되지 아니한 경우.

3. 第157條의3 第2項第1號·第2號에 規定한 事項 및 出願인의 姓名이나 名稱을 記載하지 아니한 경우.

4. 明細書 또는 請求의 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② 特許廳長은 國際出願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書面으로 節次를 補正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③ 特許廳長은 國際出願이 圖面에 관하여 記載하고 있으나 그 出願에 圖面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趣旨를 出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節次의 補正命令을 받은 者가 指定된 期間내에 補正을 한 경우에는 그 補正에 관계되는 書面의 到達日을,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者가 商工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圖面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圖面의 到達日을 國際出願日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通知를 받은 者가 商工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圖面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圖面에 관한 記載은 없는 것으로 본다.

第157條의5 (補正命令) 特許廳長은 國際出

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書面으로 補正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1. 發明의 名稱의 記載가 없는 경우.

2. 抄錄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第21條 또는 第157條의7 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경우.

4. 商工部令이 정하는 方式에 違反한 경우.

第157條의6 (取下된 것으로 보는 國際出願등)

① 國際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國際出願은 取下된 것으로 본다.

1. 第157條의 5의 規定에 의한 補正命令을 받은 者가 指定期間내에 補正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國際出願에 관한 手數料를 商工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納付하지 아니하여 特許協力條約 第14條(3)(a)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第157條의 4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이 인정된 國際出願에 관하여 商工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그 國部出願이 第157條의4 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1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② 國際出願에 관하여 所定의 手數料의 一部를 商工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納付하지 아니하여 特許協力條約 第14條(3)(b)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手數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指定國의 指定은 取下된 것으로 본다.

③ 特許廳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 또는 國際出願의 指定國의 一部가 取下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事實을 出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57條의7 (代表者등) ① 2인이상이 共同으로 國際出願을 하는 경우에 第1節의 規定에 의한 節次는 商工部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出願인의 代表者가 그 節次를 行하거나 그 代表者에 대하여 節次를 行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이 共同으로 國際出願을 하는 경우에 出願인이 代表者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商工部令이 정하는 出願人을 代表者로 본다.

③ 代理人에 의하여 第1節의 規定에 의한 節次를 行하고자 하는 者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法定代理人에 의하여 節次를 行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辨理士를 代理人으로 하여야 한다.

第157條의8 (手數料) 國際出願을 하는 者는

商工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 하여야 한다.

第2節 國際特許出願에 관한 特例

第157條의9 (國際出願에 의한 特許出願) 特許協力條約에 의하여 國際出願日이 인정된 國際出願으로서 特許를 받기 위하여 大韓民國을 指定國으로 指定한 國際出願은 그 國際出願日에 出願된 特許出願으로 본다.

第157條의10 (優先權 主張의 特例) ①第42條第2項의 規定은 第157條의9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 이하 國際特許出願이라 한다)의 優先權主張에 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國際特許出願의 優先權主張에 관하여는 第42條 第3項의 規定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 主張을 한 者”는 “特許協力條約 第8條(1)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한 者”로, “등본”은 “謄本 또는 寫本”으로, “特許出願日로부터 3月내”는 “同條約 第2條(xi)의 優先日로부터 1年9月이내”로 한다.

第157條의11 (國際特許出願의 翻譯文) ①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은 特許協力條約 第2條(xi)의 優先日(이하 “優先日”이라 한다)로부터 1年 8月이내에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出願書·明細書·請求의 범위 및 圖面の 國語에 의한 翻譯文(다만, 圖面은 翻譯文이 必要한 경우에 限한다)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期間內에 出願書·明細書 및 請求의 범위의 翻譯文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그 國際特許出願은 取下된 것으로 본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翻譯文을 제출한 出願人은 第1項의 期間內에 한하여 그 翻譯文에 갈음하여 새로운 翻譯文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出願人이 出願審査의 請求를 한 후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④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特許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の 記載된 事項으로서 優先日로부터 1年 8月(그 期間內에 出願人이 出願審査의 請求를 한 때에는 그 請求日, 이하 “基準日”이라 한다)이내에 제출된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翻譯文(이하 “出願翻譯文”이라 한다)에 記載되지 아니한 것은 國際出願日

에 제출된 國際特許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に 記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國際特許出願의 出願翻譯文은 第8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特許出願書 및 그 添附書類로 본다.

第157條의12 (書面の 제출)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은 第157條의11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翻譯文의 제출과 동시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書面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出願人의 姓名이나 名稱 및 住所나 營業所 法人에 있어서는 그 代表者의 姓名도 記載할것)
2. 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
3. 提出年月日.
4. 發明의 名稱
5. 發明者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
6. 國際出願日 및 國際出願番

第157條의13 (國際段階에서의 補正) ①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은 特許協力條約 第19條(1)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調査報告書를 받은 후에 國際特許出願의 請求의 범위에 대하여 補正을 한 때에는 基準日까지 당해 補正書의 國語에 의한 翻譯文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書의 翻譯文이 제출된 때에는 그 補正書의 翻譯文에 의하여 第10條의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請求의 범위가 補正된 것으로 본다.

③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은 特許協力條約 第19條(1)에 規定한 說明書를 同條約 第2條(xix)의 國際事務局(이하 “國際事務局”이라 한다)에 제출한 때에는 그 說明書의 國語에 의한 翻譯文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은 基準日까지 第1項 또는 第3項에 規定한 節次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特許協力條約 第19條(1)의 規定에 의한 補正書 또는 說明書는 提出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第10條의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期限은 第2項의 補正에 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57條의14 (出願公開時期的 特例) 國際特許出願의 出願公開에 관하여는 第83條의2 第1項중 “特許出願日(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

主張을 인정받은 出願에 있어서는 그 優先權 主張日로부터 1年 6月”은 “優先日로부터 1年 8月”로 한다.

第157條의15 (補正의 特例) ①國際特許出願에 관하여는 第157條의11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節次를 밟고 第7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하여야 할 手數料를 納付한 후 基準日을 경과한 後가 아니면 第10條의2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補正(第157條의13 第2項에 의한 補正을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② 國際特許出願의 補正에 관하여는 第10條의2 第2項중 “出願日(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主張을 인정받은 出願에 있어서는 그 優先權主張日)” 및 第10條의2 第4項중 “特許出願日”은 “優先日”로 한다.

③ 國際特許出願의 補正이 가능한 範圍에 관하여는 第10條의3중 “出願書에 最初에 첨부한 說明書 또는 圖面에 記載된 事項”은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國際特許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과 그 出願翻譯文에 다같이 記載된 事項”으로 한다.

第157條의16 (出願變更時期의 제한) 實用新案法 第2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에 관하여는 同法 第29條의3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節次를 밟고 同法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하여야 할 手數料를 納付한 후, 同法 第29條의11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에 관하여는 同項에 의한 決定의 後가 아니면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許出願으로 變更出願할 수 없다.

第157條의17 (出願審査請求의 時期制限) 國際特許出願의 出願인은 第157條의11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節次를 밟고 第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한 후 國際特許出願의 出願인이 아닌 者는 優先日로부터 1年8月을 경과한 後가 아니면 第80條의2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國際特許出願에 관하여 出願審査의 請求를 할 수 없다.

第157條의18 (國際調査報告書에 記載된 文獻의 提出命令) 特許廳長은 國際特許出願의 出願인에 대하여 期間을 정하여 特許協力條約 第15條의 國際調査報告書에 記載된 文獻의 寫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第157條의19 (拒絕査定의 特例) 國際特許出願의 拒絕査定에 관하여는 第82條第1項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는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과 그 出願翻譯文에 다같이 記載되어 있는 發明의 發明에 관하여 된 때(그것을 이유로 特許異議申請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로 한다.

第157條의20 (特許의 無效事由의 特例) 國際特許出願의 無效事由에 관하여는 第69條第1項中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國際出願日에 提供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과 그 出願翻譯文에 다같이 記載되어 있는 發明의 發明에 관하여 된 경우 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第157條의21 (決定에 의하여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 ① 國際出願의 出願인은 特許를 받기 위하여 大韓民國을 指定國으로 한 國際出願이 特許協力條約 第2條(XV)의 受理官廳에 의하여 同條約 第25條(1)(a)에 규정한 拒否, (a) 또는 (b)에 규정한 宣言이 되거나, 國際事務局에 의하여 同條約 同條(1)(a)에 규정한 인정이 된 때에는 特許廳長에 同條約 同條(2)(a)에 규정한 決定을 하여줄 것을 商工部令이 정하는 期間內에 國際事務局에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申請을 하는 者는 商工部令이 定하는 期間內에 出願書·明細書·請求의 범위·圖面 기타 商工部令이 정하는 國際出願에 관한 書類의 國語에 의한 翻譯文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特許廳長은 第2項의 翻譯文이 제출된 때에는 第1項의 申請에 관계되는 拒否·宣言 또는 인정이 特許協力條約 및 同規則의 規定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④ 特許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拒否·宣言 또는 인정이 特許協力條約 및 同規則의 規定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 決定을 한 때에는 그 決定에 관련된 國際出願은 그 國際出願에 대하여 拒否·宣言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國際出願日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出願된 特許出願으로 본다.

⑤ 特許協力條約 第25條(1)에 規定한 拒否·宣

言 또는 인정을 받은 國際出願의 出願인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國際出願에 관하여 第1項에 規定한 申請 및 그 申請과 관련되는 節次의의 節次를 밟을 수 없다.

⑥ 第157條의10·第157條의11第4項 및 第5項·第157條의13·第157條의14·第157條의15第2項 및 第3項·第157條의18 내지 第157條의20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條의2 第2項 및 第8章의2(第157條의2 내지 第157條의21)의 改定規定은 特許協力條約이 大韓民國에 대하여 效力이 發生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法律第3567號

實用新案法中改正法律

實用新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의2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第1項의 他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이 第29條의3 第1項의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法 第157條의10 第1項의 國際特許出願(第29條의11 第4項 또는 特許法 第157條의21 條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을 包含한다)인 경우에 第1項의 適用에 있어서는 第1項중 “出願書에 最初에 첨부한 明細書 또는 圖面に 記載된 考案 또는 發明”은 “國際出願일에 제출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과 그 出願翻譯文에 다같이 記載된 考案 또는 發明”으로 한다.

第25條第2項 但書를 削除한다.

“第4章의2 (第29條의2 내지 第29條의11)”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章의2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에 관한 特例

第29條의2 (國際出願에 의한 實用新案登錄出願) 特許協力條約에 의하여 國際出願일이 인정된 國際出願으로서 實用新案登錄을 받기 위하여

大韓民國을 指定國으로 指定한 國際出願은 그 國際出願일에 出願된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본다.

第29條의3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翻譯文)

① 第2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이하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이라 한다)의 出願인은 特許協力條約 第2條(xi)의 優先日(이하 “優先日”이라 한다)로부터 1年 8月 이내에 國際出願일에 제출한 出願書·明細書·請求의 범위 및 圖面の 國語에 의한 翻譯文(다만, 圖面은 翻譯이 必要한 경우에 限한다)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期間內에 出願書·明細書 및 請求의 範圍의 翻譯文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그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은 取下된 것으로 본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翻譯文을 제출한 出願인은 第1項의 期間內에 한하여 그 翻譯文에 같음하여 새로운 翻譯文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出願인이 出願審査의 請求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國際出願일에 제출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に 記載된 事項으로서 優先日로부터 1年 8月(그 期間內에 出願인이 出願審査의 請求를 한 때에는 그 請求日, 이하 “基準日”이라 한다) 이내에 제출된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翻譯文(이하 “出願翻譯文”이라 한다)에 記載되지 아니한 것은 國際出願일에 제출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に 記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翻譯文은 第8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實用新案登錄出願書 및 그 添附書類로 본다.

第29條의4 (書面の 제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인은 第29條의3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翻譯文의 제출과 동시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書面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出願인의 姓名이나 名稱 및 住所나 營業所(法人에 있어서는 그 代表者의 姓名도 記載할 것).

2. 出願인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

3. 提出年月日.

4. 考案의 名稱.
5. 考案者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
6. 國際出願日 및 國際番號.

第29條의5 (圖面의 제출) ①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은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國際出願이 圖面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基準日까지 圖面(圖面에 관한 簡單한 說明을 포함한다)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特許廳長은 基準日까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圖面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에게 期間을 정하여 圖面의 제출을 命할 수 있다. 基準日까지 第29條의3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圖面의 翻譯文의 제출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圖面의 제출命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한 期間내에 그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을 無效로 할 수 있다.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圖面은 第29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0條의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으로 본다. 다만, 第29條에서 準用하는 同法 第10條의2 第2項의 補正期限은 圖面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9條의6 (出願變更時期의 제한) 特許法 第157條의9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에 관하여는 同法 第157條의11第1項의 規定에 의한 節次를 밟고 同法 第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하여야 할 手數料을 納付한 후, 同法 第157條의21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에 관하여는 그 決定의 후가 아니면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變更出願할 수 없다.

第29條의7 (出願審査請求의 時期제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은 第29條의3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節次를 밟고 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하여야 할 手數料을 納付한 후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이 아닌 者는 優先日로부터 1年 8月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에 관하여는 出願審査의 請求를 할 수 없다.

第29條의8 (拒絕査定의 特例)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拒絕査定에 관하여는 第24條의2 第1項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는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과 그 出願 翻譯文에 다같이 記載되어 있는 考案의 考案에 관하여 된 때(그것을 이유로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로 한다.

第29條의9 (實用新案登錄의 無效事由의 特例)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無效事由에 관하여는 第19條第1項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과 그 出願翻譯文에 다같이 記載되어 있는 考案의 考案에 관하여 된 경우 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第29條의10 (準用規定) 特許法 第157條의10·第157條의13 내지 第157條의15 및 第157條의18 規定은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9條의11 (決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 ①國際出願의 出願人은 實用新案登錄을 받기 위하여 大韓民國을 指定國으로 指定한 國際出願이 特許協力條約第2條(xv)의 受理官廳에 의하여 同條約 第25條(1)(a)에 規定한 拒否, (a)또는 (b)에 規定한 宣言이 되거나, 同條約第2條(xix)의 國際事務局(이하 “國際事務局”이라 한다)에 의하여 同條約 第25條(1)(a)에 規定한 인정이 된 때에는 特許廳長에게 同條約 同條(2)(a)에 規定한 決定을 하여줄 것을 商工部令이 定하는 期間내에 國際事務局에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申請을 하는 者는 商工部令이 定하는 期間내에 出願書·明細書·請求의 범위·圖面 기타 商工部令이 정하는 國際出願에 관한 書類의 國語에 의한 翻譯文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特許廳長은 第2項의 翻譯文이 提出된 때에는 第1項의 申請에 關聯되는 拒否·宣言 또는 인정이 特許協力條約 및 同規則의 規定에 따라 正當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④ 特許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拒否宣言 또는 인정이 特許協力條約 및 同規則의

規定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決定을 한 때에는 그 決定에 關連된 國際出願은 그 國際出願에 대하여 拒否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國際出願日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出願된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본다.

⑤ 特許協力條約 第25條(1)에 規定한 拒否·宣言 또는 인정을 받은 國際出願의 出願人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國際出願에 關하여 第1項에 規定한 申請 및 그 申請과 關連되는 節次의의 節次를 밟을 수 없다.

⑥ 第29條의5 및 特許法 第157條의21 第6項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

5條의2 第2項 및 第4章의2 내지 第29條의 11)의 改正規定은 特許協力條約이 大韓民國에 대하여 效力이 發生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法律第3568號

意匠法中改正案法律

意匠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2項 但書를 削除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11月の 메모

◁本會主要實行業務▷

- | | | |
|--|--------------------------------------|--|
| 3日 ◇實用新案公報 第574號 發刊 | (7月分추가) 發刊 | ◇第383回 이週의 優秀發明「常用入力電源의 自動交換電源裝置」選定 報道依賴 |
| ◇商標公報 第220號 發刊 | 13日 ◇實用新案 第575號 發刊 | ◇工業所有權 大法院判例 (8.9月分) 發刊 |
| 4日 ◇特許公報 第746號 發刊 | 15日 ◇特許公報 第749號 發刊 | 26日 ◇第47回 業種別(化工部 門) 實務懇談會 開催 |
| 5日 ◇特許公報 第747號 發刊 | ◇商標公報 第221號 發刊 | 29日 ◇特許公報 第752號 發刊 |
| ◇第380回 이週의 優秀發明「모우더 界磁電流異狀 檢出裝置」選定報道依賴 | 18日 ◇第382回 이週의 優秀發明「室內超音波加濕機」選定 報道依賴 | 30日 ◇海外特許情報第72輯 發刊 |
| 10日 ◇特許公報 第747號 發刊 | 20日 ◇特許公報 第750號 發刊 | ◇工業所有權現況分析(7. 8.9月分) 發刊 |
| ◇第381回 이週의 優秀發明「多目的容器」選定 報道依賴 | 22日 ◇特許公報 第751號 發刊 | |
| 11日 ◇工業所有權 大法院判例 | 23日 ◇商標公報 第222號 發刊 | |
| | 24日 ◇商標公報 第223號 發刊 | |
| | 25日 ◇會誌「發明特許」11月號 發刊 | |